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13

발의연월일: 2021. 7. 2.

발 의 자:구자근・강기윤・권명호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영식

김예지 • 박성민 • 윤두현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,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·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·법인세 외에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 대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 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연장하는 한편,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·이전하는 경우 취득세,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(안 제80조제

1항, 제80조의2 신설 및 제15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0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)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(수도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, 그 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 1.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
- 2.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견기업(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

- 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1.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만,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18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 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하다.

② 제1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 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	제80조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
감면)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	감면) ①
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	
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	
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	
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	
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	
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	
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	
세를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	2025년 12월 31일
제하고,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	
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	
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	
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	
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	
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0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
	복귀에 대한 감면) ① 대한민
	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 (수도권은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 1.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로 이전하는 경우
- 2.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이로 정하는 중견기업 (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

제152조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52조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대한 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

경우를 포함한다)으로서 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1.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 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 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 <u>만, 합병·분할</u> 또는 분할합 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 다.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-----

<u>8년</u>	12월	31	<u>일</u> 까지	국	내(수)	도
권은	제외	한다	. 이항	- o]	조에/	서
같다)에서	창	업하기	나	사업	장
슬	신설히	는	경우	에는	제2현	항-
또는	제3형	}에	따라	개인]지방:	소
득세	를 감	면한	다.			

- 1. 2. (생 략)
- ② ~ ⑥ (생 략)

년 12월 31일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